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. 9. 22 선고 2020가단1437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통영시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장민관

소송대리인 B, C, D, E

변 론 종 결 2022. 8. 25.

판 결 선 고 2022. 9. 2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, 856,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2020. 2. 6.부터 통영시 F 도로 17㎡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4,2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통영시 F 도로 17.0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하고, ‘통영시 G면’ 기재는 생략한다)에 관하여, 원고의 아버지인 망 H은 1947. 4. 16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원고는 2019. 5. 9.에 1971. 11. 16.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1972. 5. 18.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·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,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,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배타적 사용·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.

3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

피고가 1972. 5. 18.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,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 사용이익을 얻고,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,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,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,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,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,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,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,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,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,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·배타적인 사용·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,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·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,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(대법원 2019. 1. 24.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든 증거,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인다.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,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.

①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1972년경부터 도로로 사용되었고,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, 이 사건 토지에서 약 2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I에서 거주하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가하였다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.

② 이 사건 토지는 1972. 5. 18. J 답 43평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고 난 나머지 부분인 J 답 38평(126㎡, 원고의 소유였다가 1981. 2. 12. K 명의의 1974. 10. 3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이후 2019. 5. 1. 지적재조사 완료로 인하여 L에 이기되었다)의 입구로도 사용되므로, 이 사건 토지로 인하여 J 답 38평의 증대된 효용가치를 매매가격에 반영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렸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[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J 답 38평을 K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,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(이하 ‘특별조치법’이라 한다)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,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

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인바(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), 달리 위 K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질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].

③ 역시 망 H 소유였던 M 토지에서 1972. 5. 18.1) 에 분할된 N 전 2평, O 전 4평과 이 사건 토지는 모두 1972. 5. 18. 그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는데,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는 위와 같이 동일한 날에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. 그리고 원고가 1973. 11. 16. 위 토지분할 이후 M 전 523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, 망 H은 1971. 11. 16. 사망하였으므로, 결국 위와 같은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은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.

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7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. 11. 16.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. 5. 9.경까지 약 47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.

⑤ 이 사건 토지 주변 마을 주민 5명은 ‘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개설된 도로는 1970년대 새마을도로로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포장하여 개설되었다’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여인지

1) 이 사건 토지가 J 답 43평에서 분할된 날과 같다.